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 재연장 고시

전라남도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일상과 조화되는 사회적 대응체계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다음과 같이 재연장하여 고시합니다.

2022. 2. 6.

전라남도지사


[1] 적용기간 : '22. 2. 7.[월] 0시 ~ '22. 2. 20.[일] 24시

[2] 적용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전라남도 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집합·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관계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등

[3] 적용내용

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불임 1, 3 확인**)

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등 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1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PC방 ▲ 멀티방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 파티룸 ▲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9종)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 오락실 ▲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 실외체육시설 ▲ 숙박시설 ▲ 키즈카페 ▲ 돌잔치 ▲ 전시회·박람회 ▲ 이·미용업 ▲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도서관 ▲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스터디카페 ▲ 학원 등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및 기타시설(3종)
▲ 종교시설 ▲ 콜센터 ▲ 물류센터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입장(이용)시 ^접종완료자와 ^PCR음성확인자 등*, ^예외자**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

* 접종완료자, 완치자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2.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로 변경, 계도기간 : '22.3.1.~'22.3.31.),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나.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준수

-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밀집도 완화 : 계도기간 '22. 2. 7. ~ 2. 25.
 - (학원 등)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또는 2m²당 1명 준수
 -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어앉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
- 시설유형별 방역수칙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1)' 및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붙임3)' 확인

【 경과규정 등 】

-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2. 2. 21.(월) 05시까지 적용
- ②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연령 확대** : '22. 3. 1.(화) ~ 별도안내 시까지
 - ▶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연령) : 18세 이하 → 11세 이하인 자
 - ▶ 계도기간 : 2022년 3월 1일(화) ~ 2022년 3월 31일(목)
- ③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밀집도 완화조치 계도기간** : '22. 2. 7.(월) ~ '22. 2. 25.(금)

2.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2 확인)

가. 사적 모임 제한(전국 6명까지 가능)

-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7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식당·카페) 접종완료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제한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키페 정기모임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6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진행요원, 종사자 등을 제외

【 사적모임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나. 사적 모임 외 집합·모임·행사 제한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 (1~4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50~2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가능
 - (300명 이상) ①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 사전 승인 후 가능
- *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22.3.1.부터는 11세 이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관련 사항 일체는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결혼식장, 실내·외 체육시설 등은 아래와 같이 운영 가능
 - (결혼식장) 위 인원제한(1~299명)을 동일 적용하되, 종전 수칙 중 밀집도 제한 부분을 택일하여 적용 가능(혼합적용 불가)
 - (실외체육시설) 사적 모임 제한(전국 6명) 초과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추가 가능, 전체 인원 수는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실내체육시설)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적용 대상 모임·행사(예시) / 결혼식장 등 종전 수칙】

- ▲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 (결혼식장 등 밀집도 제한 수칙)
 - (결혼식장_{최식O}) 최대 250명 가능(미접종자 49명+ 접종완료자 201명)
 - (전시회·박람회) 모임행사 기준을 적용하되, 50명 미만 행사는 4m²당 1명 밀집도 제한※ 부스 내 상주인력 기준(최초 업무 시작일 전 2일 이내 PCR검사 또는 접종완료자)은 권고수칙으로 적용
- ▲ (국제회의·학술행사) 모임행사 기준을 적용하되, 50명 미만 행사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준수

○ 집합·모임·행사 중 취식 가능 여부(취식금지 원칙)

- (1명~49명)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
- (50명~299명)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모임·행사 중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
- (300명 이상)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하되,
 - 50명 규모 이상인 경우,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단, 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본회의 등 국회(지방의회 회의 포함)는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
-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청객 등이 있는 방송제작·송출 등

라. 시험은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

④ 위반 시 조치사항 등

- 불임의 방역지침 및 기본방역수칙 등을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이 가능합니다.
-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⑤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제3항, 제80조제7호, 제81조제10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불임 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참고1

전라남도 방역조치 요약표 ('22. 2. 7. ~ 2. 20.)

용어 정리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회갑·칠순,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자 등, 18세 이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
* 18세 이하인 자 → 2022년 3월 1일(화)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로 조정

□ 사적모임 전국 6명까지

- 사적모임을 6명까지 허용하되,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의 경우만 예외인정(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예시) 식당·카페 이용 예시

전국 공통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 + 접종완료자 등 0명 ⇒ 1명(O)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 + 접종완료자 등 1명 ⇒ 2명(X)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시설 조정

- 11개 업종 방역패스 적용
 -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1종)

-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 PC방 ▲ 멀티방
- ▲ 노래(코인)연습장
- ▲ 실내체육시설
- ▲ 목욕장업
- ▲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 식당·카페
- ▲ 파티룸
- ▲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 ▲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9종)

- ▲ 결혼식장
- ▲ 장례식장
- ▲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 ▲ 오락실
- ▲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 ▲ 실외체육시설
- ▲ 숙박시설
- ▲ 키즈카페
- ▲ 돌잔치
- ▲ 전시회·박람회
- ▲ 이·미용업
- ▲ 국제회의·학술행사
-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 도서관
- ▲ 영화관·공연장
- ▲ 독서실·스터디카페
- ▲ 학원 등
-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및 기타시설(3종)

- ▲ 종교시설
- ▲ 콜센터
- ▲ 물류센터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

구 분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22. 3. 1. 부터 11세 이하)
유흥시설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고위험시설 별도 적용)	○	○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	×

□ 단계적 일상회복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구분	방역수칙
모임·행사	
사적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 구분없이 6명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상황에 따라 도와 협의하여 사적모임 기준 완화 및 강화 조치 가능 *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동거가족 모임,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실외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③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행사·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종 구분없이 49명까지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 * (행사) 단체법안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구분	방역수칙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유흥시설 5종 [유흥·단란·감성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시간) 21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완치자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 가능, 콜라텍·무도장 불가능
노래(코인)연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시간) 21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p>*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유사한 운영시설(ex. 뮤비방, 오락실 내 노래방)은 동일 적용</p>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카지노는 22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p>*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풋살장, 농구장 등 특성상 일정 수 이상이 모여야 경기 성립이 가능한 운동시설 등의 경우,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p>
식당카페 (홀덤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시간) 21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의 경우만 예외 인정 *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로만 이용(편의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 (편의점 또는 휴게음식점) 단순 물품 구매의 경우 방역패스 미적용하되 실내·외 취식하는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21시까지 운영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취식 가능 여부) 가능
PC방 멀티방(홀덤게임장) 마사지업소 안마소 파티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시간) 22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 신고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을 제외하고 의료법에 의거하지 않은 자유업 마사지업소는 운영시간 제한 적용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p>*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 · 공연장) 또는 좌석 간 칸막이 (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p>

구분	방역수칙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p>*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p>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호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22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해 각각 영화상영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이용) 가능하되,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p>*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p>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학원 등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22시까지(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또는 2m²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띄어앉기 예외 * 계도기간 : '22. 2. 7. ~ '22. 2. 25. * (관악기, 노래, 연기교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주·노래·연기 시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이용 시 덮개 사용 - 착석 시 : 한 방향으로 착석 * (댄스·무용 교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춤출 때 :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유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p>*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 · 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띄어앉기 예외 * 계도기간 : '22. 2. 7. ~ '22. 2. 25.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영화관·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22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해 각각 영화상영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이용) 가능하되,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p>*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p>

구분	방역수칙
오락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22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 (밀집도) 시설 신고 · 허가 면적의 4m²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p>* 사적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추가 가능, 이 경우에도 전체 인원 수는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p> <p>* 매장 내 전 구역 3회 이상 순회 점검 및 점검대장 작성*</p> <p>- 해당 수칙은 대규모점포 및 3,000m²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예: 하나로마트)에만 적용</p>
전시회·박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p>*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p>

구분	방역수칙
결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4m²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이용 가능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 299명까지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잔치, 장례식, 피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4m²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이용 가능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 299명까지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 ~ 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 *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 · 성가대 가능(마스크 상시 착용)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등 시설별 방역수칙 참조

참고2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현황

시군	총계	보건소 운영시간			의료기관 운영시간			
		평일	토요일	공휴일	기관명	평일	토요일	공휴일
합계	56	22			35			
목포	7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목포한국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목포기독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목포중앙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목포시의료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세안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전남중앙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여수	5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여천전남병원	09시~17시	09시~13시	미운영
					여수전남병원	09시~17시	09시~12시	미운영
					여수한국병원	09시~17시	09시~12시	미운영
					여수제일병원	09시~18시	09시~13시	미운영
순천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성가를로병원	08시~11시	08시~11시	08시~11시
					순천의료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순천병원	09시~17시	00시~24시	00시~24시
나주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나주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광양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광양사랑병원	09시~11시	09시~11시	미운영
담양	2	09시~17시	09시~16시	09시~16시	담양사랑병원	08시~17시	미운영	미운영
곡성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곡성사랑병원	09시~17시	미운영	미운영
구례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구례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고흥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고흥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녹동현대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보성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보성아산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벌교삼호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화순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09시~16시	09시~13시	09시~13시
					화순성심병원	09시~18시	미운영	미운영
장흥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장흥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강진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강진의료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해남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해남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해남우리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영암	1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			
무안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무안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함평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함평성심병원	18시~09시	00시~24시	18시~24시
영광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영광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영광기독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장성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장성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완도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완도대성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진도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진도한국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신안	1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			